소식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과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 개정 및 생식류의 식중독 규격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혈압환자용 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환자용식품 및 대체식품에 대한 기준 · 규격을 신설하고, 비가열 육류제품도 고령친화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체식품 기준 신설[안 제1. 2. 3), 제3. 3.]

1) 대체식품은 현행 규정으로도 안전관리가 가능하나, 시장 성장에 따라 다양한 대체식품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 필요성 대두
2)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대체식품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제품 다양화 및 소비자 선택 용이성 증대

나.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안 제2. 3. 5) (2) ①]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무기비소의 노출점유가 높은 식품에 기준 마련 필요
2)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
3)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국제적인 무기비소 관리 강화 추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다. 고령친화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 2. 3) (3)]

1) 고령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제품은 충분히 익혀서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시설 등에서 바가열 상태의 제품도 수요가 큼
2) 비가열 상태의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 · 가공기준 개정
3) 고령자 수요에 따른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 · 공급 기반 마련

라. 유채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안 제5. 7. 7-1 3) (6)]

1) 유채유의 독성 지방산인 에루스산 관리를 위한 기준 · 규격 마련 필요
2)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제조시 에루스산 함량이 2% 이하로 제조하도록 제조 · 가공기준 신설
3) 유채유에 에루스산 기준 · 규격 마련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국민 건강 제고

마.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유형 및 기준 · 규격 신설[안 제5. 11. 11-1, 제5. 11. 11-2, 제5. 11. 11-3]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고혈압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바. 식염의 유형 분류 개정[안 제5. 13. 13-6 (4) ~ (5)]

1) 정제소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해양심층수염의 식품유형을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재분류 필요
2) 해양심층수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3) 제품의 특성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 및 기준 · 규격 적용으로 합리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사. 생식류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23. 23-1 5)]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 ·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 · 도입 필요
2)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식류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아.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가스가마이신, (14) 디노테퓨란, (29) 디클로르보스, (33) 디티아논, (34) 디티오카바메이트, (36) 디페노코나졸, (40) 루페뉴론, (44) 마이클로뷰타닐, (45) 만데스트로빈, (48) 말라티온, (53) 메타미도포스, (59) 메타플루미존, (60) 메탈락실, (67) 메트알데하이드, (68) 메트코나졸, (72) 메틸브로마이드, (75) 메펜트리플루코나졸, (81) 밀베멕틴, (84) 발리페날레이트, (98) 뷰프로페진, (101) 브로플라닐라이드, (107) 비페나제이트, (114) 사이목사닐, (117) 사이에노피라펜, (118) 사이클라닐리프롤, (120) 사이퍼메트린, (124) 사이플루트린, (131) 설폭사플로르, (133) 세톡시딤, (135) 스피네토람, (151) 아바멕틴, (152) 아사이노나피르, (153) 아세퀴노실, (154) 아세타미프리드, (156) 아세페이트, (157) 아시벤졸라-에스-메틸, (158) 아이소사이클로세람, (164) 아이소피라잠, (169) 아크리나트린, (174) 알루미늄포스파이드, (176)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178) 에타복삼, (179) 에탈플루랄린, (181) 에토펜프록스, (196) 엠시피에이, (207) 옥사티아피프롤린, (208) 옥솔린산, (218) 이미녹타딘, (219) 이미다클로프리드, (231) 이프플루페노퀸, (234) 인독사카브, (240) 카벤다짐, (242) 카보퓨란, (258) 클로로탈로닐, (261) 클로르페나피르, (264) 클로르플루아주론, (269) 클로펜테진, (273) 테부코나졸, (274) 테부페노자이드, (279) 테트라닐리프롤, (283) 테플루벤주론, (292) 트리아디메놀, (293) 트리아디메폰, (300)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09) 티아메톡삼, (311) 티아클로프리드, (314) 티오벤카브, (331) 페녹사프로프-에틸, (346) 펜티오피라드, (348) 펜프로파트린, (367) 프로클로라즈, (377) 프로피코나졸, (380) 플로니카미드, (382) 플로릴피콕사미드, (384) 플루디옥소닐, (388) 플루벤디아마이드, (393) 플루아지포프-뷰틸, (400) 플루톨라닐, (402) 플루티아닐, (405) 플루페녹수론, (406) 플루피라디퓨론, (408) 플룩사메타마이드, (414) 피라지플루미드, (416) 피라클로스트로빈, (427) 피리벤카브, (431) 피리플루퀴나존, (432) 피메트로진]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가스가마이신 등 8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5 중 (29) 디클라주릴]

1) 산란중인 닭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배합사료를 통해 알에 비의도적으로 오염 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

2) 알에 항원충제인 디클라주릴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2-576호
(2022. 12. 22. ~ 2023. 2. 22.)

나) 공고 제2023-213호
(2023. 5. 1. ~ 2023. 6. 30.)

2) 식품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공고 제2022-576호 관련

(1)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3. 3. 1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23. 3. 9.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2023. 3. 9.

(4)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3. 5. 18.

나) 공고 제2023-213호 관련

(1)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3. 7. 17. ~ 2023. 7. 20.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3. 7. 10. ~ 2023. 7. 14.

3) 규제심사

가) 공고 제2022-576호 관련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2-5256호(2022. 12. 5.)

(2)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3. 6. 19 ~ 6. 20, 원안의결)

(3)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 위임일탈 해당없음 (2023.8.16.)

(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제900회, 2023. 8. 21 ~ 8.25)

나) 공고 제2023-213호(2023. 5. 1. ~ 2023. 6. 30.)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3-1897호(2023. 4. 26.)

소식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0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식품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에 산화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하며, 혼합제제의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식품 중 유지성분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도록 헥산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용어의 정의 등을 명확히 개선하고,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등을 정비하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13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 확대

1)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안전성 자료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확대(안 [별표 1] [표 2])

나.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도록 산화철 신규 지정

1) 적색의 산화철인 삼이산화철에 황색, 흑색의 산화철을 추가하여 '산화철'로 하고 성분규격 신설(안 II. 4. 가. 산화철)

2) 산화철을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캡슐부분) 및 캡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신설(안 II. 5. 가. 산화철)

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선

1) 식품 제조의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혼합제제의 희석제 종류 확대(안 II. 4. 나. 혼합제제)

2) 식품 중 유지성분의 추출 · 정제 등에 사용하도록 헥산 사용기준 확대(안 II. 5. 가. 헥산)

라. 구연산칼슘 등 2품목 성분규격 및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등 정비

1) "구연산칼슘"의 CAS번호 수정(안 II. 4. 가. 구연산칼슘)

2) "γ-오리자놀"의 함량 단위 수정(안 II. 4. 가. γ-오리자놀)

3) 합성향료물질 중 중복되는 1종을 삭제하고 합성향료물질 3종의 이명 정비(안 II. 5. 가. 향료 [표 2] D151, D155, D173, H078)

4) 합성향료물질 중 일반명과 이명이 다른 물질 정비(안 II. 5. 가. 향료 [표 2] D181, D294)

바. 정확한 분석을 위한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개선 등

1)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13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안 II. 4. 가. 글루코오스산화효소, 글루코오스이성화효소, 비타민C,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α-아밀라아제, 인베르타아제, 인산철, 제삼인산칼슘, 제이인산칼슘, 제일인산칼륨, 제일인산칼슘, 판크레아틴, 효소처리스테비아)

2) 시험법 현대화를 위한 젖산염 시험법 개선 및 젖산염 시험에 필요한 시약 추가(안 Ⅳ. 29. (26) 젖산염, 안 Ⅴ. 1. 니트로페리시안화나트륨, 몰포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301호, 2023.6.20. ('23.6.20.~'23.8.21.)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3.6.13.)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3.9.1.) : 원안의결

소식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2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해외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위생평가 주기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우대제도 도입

나. 위생평가 주기 산정기준 개선

다. 식품공전 유형 명칭 변경

라. 알기 쉬운 용어정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367호, 2023. 7. 21. (2023. 7. 21. ~ 2023. 8. 10.)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3-3160호(2023. 7. 10.)

소식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유형별 정의 및 제조 · 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별 정의 및 기준 · 규격 개정[안 제2. 3. 5) (3) ④, 제5. 7-1 4) (17), 제5. 11-1 3) (1), 제5. 11-2 3) (1), 제5. 16-7 5) (3)]

1) 다양한 식품이 개발 ·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정의 및 기준 · 규격 개정 필요

2) 식품유형은 다르지만, 원료가 같은 식품('옥수수 또는 수수를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과 '옥수수 또는 수수를 단순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이 100%인 곡류가공품')에 동일한 곰팡이 독소 기준이 적용되도록 푸모니신 기준 개정

3) 동일한 식물로 부터 얻은 유지라면, 과육 · 씨앗 등에서 채취한 유지와 착유하고 남은 박에서 채취한 유지를 혼합하더라도 단일 식물성 유지인 기타 식물성유지로 분류

4)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미생물 증식우려가 적은 분말제품은 살균 또는 멸균 공정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5) 탈지 참깨분 및 대두분은 산가 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

6)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 규격 개선으로 기준적용의 혼선방지 및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식품원료 목록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원료의 정비 필요

2) 섬말나리 등 농 · 수산물 105 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명칭수정(86건), 학명수정(55건), 사용부위 명확화(1건), 원료목록 통합 및 분리(15건)를 통해 식품원료 목록 정비

4)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대상 명확화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3) 글리포세이트, (5) 나프로파마이드, (13) 델타메트린, (14) 디노테퓨란, (19) 디메토모르프, (29) 디클로르보스, (33) 디티아논, (34) 디티오카바메이트, (36) 디페노코나졸, (39) 딤프로피리다즈, (41) 루페뉴론, (46) 만데스트로빈, (47) 만디프로파미드, (54) 메타미도포스, (61) 메탈락실, (65) 메톨라클로르, (68) 메트알데하

이드, (69) 메트코나졸, (76) 메펜트리플루코나졸, (82) 밀베멕틴, (84) 발리다마이신에이, (85) 발리페날레이트, (88) 베플루부타미드, (94) 벤타존, (99) 뷰타클로르, (109) 비페나제이트, (111) 비펜트린, (117) 사이아조파미드, (118)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19) 사이에노피라펜, (120) 사이클라닐리프롤, (121) 사이클로뷰트리플루람, (123) 사이퍼메트린, (126) 사이플루메토펜, (127) 사이플루트린, (129) 사이할로트린, (134) 설폭사플로르, (136) 세톡시딤, (138) 스피네토람, (140) 스피로디클로펜, (141) 스피로메시펜, (145) 시마진, (152) 아미설브롬, (153) 아미트라즈, (156) 아세퀴노실, (157) 아세타미프리드, (159) 아세페이트, (162) 아이소티아닐, (163) 아이소페타미드, (170) 아족시스트로빈, (172) 아크리나트린, (173) 아피도피로펜, (176) 알라클로르, (17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181) 에타복삼, (186) 에톡사졸, (199) 엠시피에이, (210) 옥사티아피프롤린, (211) 옥솔린산, (212) 옥시테트라사이클린, (213) 옥시플루오르펜, (218) 이마잘릴, (221) 이미녹타딘, (229) 이프로디온, (234) 이프플루페노퀸, (237) 인독사카브, (245) 카보퓨란, (257) 크레속심메틸, (260) 클로란트라닐리프롤, (261) 클로로탈로닐, (264) 클로르페나피르, (267) 클로르플루아주론, (271) 클로티아니딘, (276) 테부코나졸, (282) 테트라닐리프롤, (287) 테플루트린, (294) 트리사이클라졸, (295) 트리아디메폰, (299) 트리클로피르, (302)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07) 트리플루미졸, (312) 티아벤다졸, (313) 티아클로프리드, (314) 티아페나실, (330) 페노뷰카브, (333) 페녹사프로프-에틸, (337) 페톡사미드, (349) 펜티오피라드, (360) 포세틸-알루미늄, (364) 폭심, (370) 프로클로라즈, (373) 프로파모카브, (383) 플로니카미드, (387) 플루디옥소닐, (395) 플루아지남, (398) 플루오피람, (399) 플루오피콜라이드, (405) 플루티아닐, (406) 플루티아셋-메틸, (408) 플루페녹수론, (411) 플룩사메타마이드, (412) 플룩사피록사드, (417) 피라지플루미드, (419) 피라클로스트로빈, (423) 피리달릴, (424) 피리메타닐, (430) 피리벤카브, (432) 피리프록시펜, (434) 피리플루퀴나존, (435) 피메트로진, (436) 피카뷰트라족스, (437) 피콕시스트로빈, (440) 피플루뷰마이드, (445) 헥사코나졸]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 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글리포세이트 등 11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 · 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5 (174)]

1) 구충제인 페반텔 및 펜벤다졸의 어류 사용 허가를 위해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어류에 페반텔/펜벤다졸/옥스펜다졸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1. 1.2 1.2.1 가. ~ 다, 제8. 1. 1.2 1.2.1 마, 제8. 2. 2.1 2.1.3 2.1.3.1 다, 제8. 3. 3.3 3.3.3 가. 5), 제8. 3. 3.3 3.3.3 가. 6) 가) (3), 제8. 4. 4.1 4.1.2 나, 제8. 4. 4.4 4.4.1 12), 제8. 4. 4.4 4.4.1 27), 제8. 4. 4.4 4.4.1 37), 제8. 4. 4.4 4.4.1 78), 제8. 4. 4.4 4.4.1 99), 제8. 4. 4.4 4.4.1 102), 제8. 4. 4.4 4.4.1 103), 제8. 4. 4.4 4.4.1 104), 제8. 4. 4.4 4.4.1 105), 제8. 4. 4.5 4.5.1 가. 1), 제8. 4. 4.7 4.7.1 가. 2), 제8. 4. 4.7 4.7.1 가. 3), 제8. 4. 4.8 4.8.1 가, 제8. 4. 4.8 4.8.2 가. 1), 제8. 4. 4.8 4.8.2 가. 2), 제8. 4. 4.8 4.8.2 가. 3), 제8. 4. 4.8 4.8.2 가. 3) 나), 제8. 4. 4.10, 제8. 4. 4.11 가. 2), 제8. 4. 4.12 4.12.1 다, 제8. 4. 4.12 4.12.2 나, 제8. 4. 4.13 4.13.1 다, 제8. 4. 4.13 4.13.2 나, 제8. 4. 4.13 4.13.2 다, 제8. 4. 4.14 4.14.1 나, 제8. 4. 4.14 4.14.1 다, 제8. 4. 4.14 4.14.2 나, 제8. 4. 4.15 가, 제8. 4. 4.15 다, 제8. 4. 4.16 다, 제8. 4. 4.18 4.18.1 나, 제8. 4. 4.18 4.18.2 나, 제8. 4. 4.19 다, 제8. 4. 4.20 가, 제8. 4. 4.20 라, 제8. 4. 4.21 가, 제8. 4. 4.26 라, 제8. 4. 4.26 바, 제8. 7. 7.1 7.1.2 7.1.2.23, 제8. 7. 7.1 7.1.3 7.1.3.113, 제8. 7. 7.1 7.1.3 7.1.3.114, 제8. 7. 7.3, 제8. 8. 8.3 8.3.16, 제8. 9. 9.2 9.2.7, 제8. 9. 9.12, 제8. 10. 10.1.5 다. 표 2, 제8. 10. 10.1.5 라.]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일반이물 시험법 중 체분별법, 여과법, 와일드만 플라스크법의 시험법을 구체화하여 시험 편의성을 높이고, 침출차 중 티백제품의 섭취방법을 고려하여 침출 여액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을 시험하도록 시험법 개선
3) 산화방지제 시험법의 시료량 개선 및 추출용매 변경
4) 총질소 및 조단백질 시험을 위한 듀마스법(연소법) 신설
5) 현장 적용의 용이성 및 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미생물 시험법(일반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등) 개정
6) 농산물 중 딤프로피리다즈 등 4종 농약 시험법 신설
7) 축산물 중 잔류농약 동시 다성분(180종) 시험법 신설 및 다성분 시험법과 중복되는 시험법 삭제
8) 노후화된 잔류동물용의약품(세프티오퍼) 시험법 개선
9) 곰팡이독소(데옥시니발레놀)의 정확성 및 정량한계 개선을 위한 시험법 개선
10) 부정물질 검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10개의 부정물질 시험법을 76종 다성분 동시분석 시험법으로 통합
11) 유전자변형식품 추가 승인 품목(DP-202216-6)에 대한 시험법 마련
12)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문구 명확화 등 기타사항[안 제4. 1. 2) (3), 제4. 2. 2) (2), 제5. 12. 5) (4), 제6. 4. (6)]

1) 기준 · 규격 적용 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 필요
2) 장기보존식품의 미생물 규격 명칭을 일반시험법의 명칭과 일치
3) 간장의 보존료 규격 단위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단위와 일치
4)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에서 야채 또는 과일의 세척시 사용할 수 있는 살균제 또는 세척제에 대한 사용기준 명확화
5) 기준 · 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신뢰도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360호(2023. 7. 18. ~ 2023. 9. 18.)
2) 식품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3.10.26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서면) '23.10.5 ~ 10.12.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서면) '23.11.1 ~ 11.7.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서면) '23.11.1 ~ 11.7.
   마)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3.11.3.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3-2782호(2023. 6. 22.)